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8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54,290.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9,934.10㎡

5. 사업시행기간

○ 2014. 8. ~ 2016.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토지조서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1	양보면 장암리	583	학	11,402	경상남도 교육감		
2	양보면 장암리	586	임	1,342	경상남도 교육감		
3	양보면 장암리	587	전	509	경상남도 교육감		
4	양보면 장암리	588	전	579	경상남도 교육감		
5	양보면 장암리	589	전	569	경상남도 교육감		
6	양보면 장암리	590	학	1,362	경상남도 교육감		
7	양보면 장암리	762	임	889	경상남도 교육감		
8	양보면 장암리	1022	구	880	국(국토교통부)		
9	양보면 장암리	산219-1	임	28,645	경상남도 교육감		
10	양보면 장암리	산219-2	임	496	경상남도 교육감		
11	양보면 장암리	산219-3	임	496	경상남도 교육감		
12	양보면 장암리	산220	임	6,076	경상남도 교육감		
13	양보면 장암리	606-2	대	407	경상남도 교육감		
14	양보면 장암리	605-2	대	638	경상남도 교육감		
	계			54,290			

기 타**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자유권규약위원회 (CCPR/C/110/D/1908/2009)

사건번호 1908/2009

자유권규약위원회 110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2014. 3. 10. ~ 3. 28.)

진 정 인 : X (대리인 : 변호사 김종철)

피 해 자 : 진정인

당 사 국 : 대한민국

진 정 일 : 2009. 10. 19. (최초제출일)

참 고 문 서 : 2009. 10. 21.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절차규정 제92항 및 제97항에 따른 결정(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4. 3. 25.

주 제 : 기독교개종자의 이란이슬람공화국으로의 추방

절 차 쟁 점 :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불충분한 주장

본 안 쟁 점 : 본국 송환 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규 약 조 항 : 제7조 및 제9조(제4항)

선택의정서 조항 : 제2조, 제5조(제2항 (b)호)

별 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 110차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1908/2009¹⁾

진 정 인 X (대리인 : 변호사 김종철)

피 해 자 진정인

당 사 국 대한민국

진 정 일 2009. 10. 19. (최초 제출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4. 3. 25.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X를 대리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1908/2009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견해를 채택한다.

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견해

1.1 진정서의 진정인은 1965년 출생한 이란 국적의 X이며, 진정을 제출할 당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본국 송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란 이슬람공화국으로 송환될 경우 자유권규약 제7조상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당사국이 규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였다.

1.2 2009. 10. 21.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규 진정 및 잠정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위원회의 절차규정 제9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사국 정부에 위원회가 동 진정을 검토하는 동안

동 진정의 심의에 참석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Yadh Ben Achour, Lazhari Bouzid, Christine Chanet, Ahmad Amin Fathalla, Cornelis Flinterman, Walter Kälin, Yuji Iwasawa, Zonke Zanele Majodina, Gerald L. Newman, Nigel Rodley, Victor Manuel Rodriguez Rescia, Fabián Omar salvioli, Anja Seibert-Fohr, Yuval Shany, Margo Waterval, Andrei Paul Zlatescu.

진정인을 추방하지 말고 진정인의 행정적 구급에 대하여 정기적 사법 심사를 보장하라고 요청하였다. 위원회의 이러한 요청은 수용되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실

2.1 진정인은 이란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다. 국제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인 ‘희망의 목소리(Voice of Hope)’를 들으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진정인은 2005. 5. 30. 유효기간 3개월의 C-2 단기 상용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 때에 진정인은 동두천의 신광교회에서 쿠르드식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심을 발전시키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진정인은 2005. 11. 4. 대마초 복용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¹⁾

2.2 형 선고 후 진정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으며 2005.12.12.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되었다.²⁾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근거는 유죄선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될 수 없는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 사무소, 출장소, 혹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장소에 보호될 수 있다.

2.3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은 2005. 12. 28. 난민신청을 하였다. 법무부는 2006. 3. 10. 진정인의 난민신청에 대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 따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하였다. 법무부는 2006. 6. 23. 1차 심사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진정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진정인에 따르면, 법무부가 위 결정의 통보 후 90일 이내에 진정인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문장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법정기일 이내에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4 진정인이 계속 구급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은 기독교 신앙이 더욱 깊어졌으며 신광교회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진정인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은 2006. 7. 10. 세례를 받아 그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2.5 진정인이 법무부의 망명신청 불인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을 2006. 10. 13., 출입국사무소는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에게 진정인을 방문하고, 그의 송환이 가능하도록 새 여권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한이란대사관 관계자와의 면담 중에 진정인은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무슬림 신앙으로 재개종하길 요구받았을 때 이란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2.6 진정인은 2007. 2. 20. 다시 난민지위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처음 난민신청이 불인정된 후 세례를 받고자 한 이유와 관련해 진정인에게 세례를 준 목사나 진정인의 증언이 배치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주한이란대사관 외교관이 진정인의 개종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주한이란대사관이 진정인의 개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란에서는 활발히 선교에 참여한 사람만이 박해의 위협에 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7. 4. 20.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란에서 선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진정인은 일요일예배에 참석하는 등 위협없이 통상적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1) 정확한 일자 는 제출되지 않았다.

2) 강제퇴거명령은 2005. 12. 12. 발부되었으나, 퇴거일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2.7 진정인의 이의신청은 2007. 5. 25. 기각되었고, 진정인은 2007. 7. 3.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인들이 이란 귀국시 박해를 받는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서울행정법원 주심 판사의 요청에 따라 2007. 10. 9. 유엔난민최고대표 서울사무소가 준비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정부기관, 국제연합, 비정부기관 등의 정보에 따르면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거나, 특히 전도에 참여할 경우에는 박해를 받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은 이의신청에서 자신을 방문했던 대사관 직원을 통해 이란 대사관 측에서 진정인의 기독교 개종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또한 자신의 기독교 개종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로서 개인 일기를 제출하였다.

2.8 진정인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8. 1. 22. 기각되었다.: 진정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첫 번째 난민신청이 불인정된 후 세례를 받은 점, 진정인이 대사관 관계자에게 기독교 개종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란 당국이 그 개종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만 근거해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교육과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의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기독교 전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개종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진정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08. 11. 11.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26. 기각되었다. 이로써 진정인은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9. 진정인은 2009. 3. 31. 서울 소재 이란대사관의 또 다른 관계자의 방문을 받았고, 동 관계자는 진정인에게 재개종할 것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2.10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에 관하여, 진정인은 본인의 난민신청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본인의 상고를 검토했으나 2009. 2. 26. 기각되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진정인은 추가 이의제기 방법이 더 이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였다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도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었던 절차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기한을 놓쳤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위 두가지 절차 모두 활용가능한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11 진정인은 또한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 무효를 확인하는 선언적 재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동 절차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법률상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행정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명령의 발부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무효로 확인할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법무부장관은 진정인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당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절차는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2.12 진정인의 구급에 대해, 진정인은 난민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법률상 규정된 기한을 놓쳐 처분취소소송이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보호명령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2005. 12. 12. 의 보호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진정인은 본

인의 최초 구금 당시부터 그 구금이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구금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의적인 구금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의 구금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호명령의 무효확인소송은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으나 이 절차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보호명령 그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이 절차는 효과적인 절차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이란 당국이 그의 개종 사실을 알고 있고, 2008년 개정된 이란 형법이 이슬람 신앙을 버린 이란 남성에게는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였기 때문에,³⁾ 고문이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이란으로 당사국이 자신을 송환한다면 규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3.2 또한 진정인은 그가 2005. 12. 12.부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진정인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으면 그의 구금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의 난민신청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09. 2. 27.이후, 그는 사법 심사없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대기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⁵⁾ 결국 진정인은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당사국이 규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진정하였다.

심리적격성에 관한 당사국의 의견

4.1. 당사국은 2010. 1. 11. 동 진정의 심리적격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강제퇴거명령과 행정적 구금의 적법성 모두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을 후 7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90일 내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진정인에게 가능하였다.

4.2 당사국은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진정인이 이란 이외의 지역으로 송환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로 동의하여 당사국은 그가 제3국과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진정인은 현재 이 제3국으로의 송환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⁶⁾

4.3. 자의적 구금에 관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당사국은 진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및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후 신속히 송환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 보호소 또는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동법 시행규칙 제78

3) 진정인은 다음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출신국 연구 및 정보, “이란 내 선교나 적극적 사목에 종사하지 않는 기독교 개종자의 상황”(2008. 11. 24.), 미국 국제종교적 자유 위원회, 2009년 연례보고서, 32-38쪽.

4) 진정인은 규약 제6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5) 이는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당시의 상황이다. 이후 진정인은 보호 일시해제되었다.

심리적격성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을 참고할 것(4.3항 참고)

6) 이 국가는 터키이다. 5.4항을 볼 것.

조 제1항에 따라 구금되었음을 상기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2005. 12. 12. 내려졌다. 이후 진정인은 2009. 11. 20. 보호 일시해제될 때까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었다.

4.4. 당사국은 2009. 12. 12.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진정인이 이 명령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제55조에 따라 보호 중 어느 때라도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지 90일 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진정인은 2009. 8. 18. 본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이의신청은 2009. 11. 3. 기각되었으나 진정인은 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4.5 당사국은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집행 전 보호 중인 자는 정부에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청구가 기각될 시 「행정소송법」에 따라 동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결정 고지 후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은 2009. 11. 20. 진정인의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진정인은 보호 일시해제된 상태이다.

4.6 이에 따라 진정인에게 본인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여전히 2009. 11. 3.의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당사국은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위 당사국 답변서에 관한 진정인의 의견

5.1. 진정인은 2010. 4. 20. 당사국의 의견에 대해 답변하였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언급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인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절차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후 각기 7일 및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했으므로, 본인이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005. 12. 12.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진정인은 두 절차 모두 현재 이용할 수 없다.

5.2.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세례를 받은 2006. 7. 10.이후에야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위반을 구성하는 송환의 사유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제책이 가용할 수 있었을 때에는 진정인이 마약사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강제퇴거가 결정되었고, 이 때문에 강제퇴거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세례를 받고 이란 송환 시 고문에 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후에는 이러한 구제절차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

5.3.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취소에 관해, 진정인이 사실상의 송환 대상자였으므로, 명령이 취소된다고 해도 당사국 내에서 안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인이 구할 수 있는 유효한 단 하나의 보호는 난민절차를 통해서였으며, 진정인은 이를 활용하였다. 당사국 내에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것이 효과적인 구제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5.4 현재 진행 중인 제3국과의 협의에 관해, 진정인은 협의가 무기한 진행되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절차라고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비무슬림국가로 송환되기를 원하나 당사국은 계속해서 터키를 제안하였다. 진정인에 따르면 터키는 이란 난민을 구금하거나 강제로 송환시키는데 참여한 바 있다.⁷⁾ 따

7) 진정인은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Keshmiri v. Turkey*, 사건번호 36370/08, 2010. 4. 13. 판결을 인용하였다.

라서 진정인은 제3국과의 협의가 그가 완료해야 하는 가용하거나 효과적인 구제책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5.5 진정인 구금과 관련한 구제책이 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진정인은 구금될 당시에는 자의적인 구금이 아니었으므로 보호명령 90일 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진정인의 구금은 정기적 사법 심사없이 2,3년간 구금된 후에야 자의적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위에 언급된 구제절차는 더 이상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다.

5.6 진정인의 보호에 대해 2009. 8. 23.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⁸⁾ 진정인이 2009. 10. 19. 동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에도 법무부가 이의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은 위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 것이라고 하였다.⁹⁾ 더욱이 진정인은 당사국이 언급한 2009. 11. 3.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5.7 최종적으로 진정인은 당사국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이 구금될 수 있으므로, 그가 보호 일시해제되었다고 하여 그 주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6.1 당사국은 2010. 4. 21. 동 진정의 본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에는 진정인의 송환과 관련해 제3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으며, 그 기간 동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보류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이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것이라는 공포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6.2 당사국은 나아가 설령 진정인이 이란으로 송환된다 할지라도 진정인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당하거나 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 1. 22. 진정인이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2009. 2. 26.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법원의 결론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이란에서 기독교 관련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함; 진정인은 최초 난민신청이 거부되자 세례를 받았음; 이란당국이 진정인의 기독교 개종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음; 이란에서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상 박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 또한 교육적, 경제적 활동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박해에 이르지 않는 점. 이에 따라 당사국은 진정인의 이란 송환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6.3 진정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는 규약 제9조에 따른 진정인의 주장에 관해, 당사국은 진정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2005. 12. 12. 보호조치된 후 진정인은 2009. 8. 18.이 되어서야 본인의 구금(보호)에 대한 행정적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진정인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6.4 당사국은 나아가 진정인이 본인의 보호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행정소

8) 당사국은 이 이의신청이 2009. 8. 18. 제출되었다고 하였다. (4.4를 볼 것)

9) 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2항에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강조 추가)”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난민신청과 보호에 관한 행정적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난민신청절차와 무관하게 그의 구금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었다. 법적 절차 중 진정인은 변호인의 대리를 받았으며, 따라서 당사국은 진정인이 고의로 진정인 본인의 구금 적법성에 관한 초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추정하였다.

6.5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진정인의 제3국 송환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안 관련 당사국 답변서에 대한 진정인의 의견

7.1 2010. 7. 14. 진정인은 제3국 송환가능성에 대한 협의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당사국이 진정인을 이란으로 송환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협의는 장기화된 구금이라는 불가피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부연하였다.

7.2 당사국이 언급하는 이의제기 절차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보호명령 통보에 대한 90일 내 행정소송 제기는 최초의 보호가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장기화된 구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진정인은 만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진정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적절한 사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부연하였다.

7.3. 보호 일시해제에 관하여, 이는 진정인이 동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보호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진정인은 정기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해야 한다. 추가로 출입국사무소는 보호 일시해제 취소 및 기간연장 거부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인은 다시 구금될 수 있다.

7.4 이란 송환시 발생할 위험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의 의견(위 2.7 참조)을 언급했으며, 선교할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진정인의 추가 서면제출

8.1 2014. 2. 5. 진정인은 47개월간의 구금 끝에 2009. 11. 20. 풀려났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그는 구금 기간 동안 건강상태가 그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치아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구금되었던 외국인보호소에는 정신건강서비스나 치과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 이후 진정인은 약물없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¹⁰⁾

10) 진정인은 2013. 12. 2. 진단서를 첨부하였다. 진정인은 2013. 9. 2. 불면증, 불안증세, 우울증 및 신경과민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단서는 의료진단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여 진정인이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매2주마다 정신상담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진단서에는 환자는 정신적 안정과 지지가 필요하고, 계속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증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은 나아가 십이지장 궤양, 손발저림, 편두통, 근육뭉침 등 여타 스트레스 관련 증세를 진단받았다.

8.2 진정인은 3천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2009. 11. 20. 보호해제된 사실을 상기하였다. 그 이후 진정인은 매 3개월마다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여 보호해제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협조와 자발적 거소신고가 자신이 무한정 구금되지 않고 석방되었더라도 소재불명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은 정기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금이 자의적이라는 자신의 이전 의견을 반복하였다.

8.3 추가로, 진정인은 자신이 2013. 12. 13. 보호해제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때, 이란 당국에서 분실한 여권을 회복하라는 출입국 당국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해제연장신청을 거부당하고, 3000달러의 보증금이 국고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진정인은 2012. 12. 30. 재보호조치 되었으며, 3천달러 보증금을 지급한 후, 보호일시해제 될 수 있었다.¹¹⁾ 진정인은 2013. 12. 13. 해제 기간 연장이 거부된 이후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8.4 진정인은 나아가 본인이 신학을 공부해왔으며 보호일시해제 이후 출석중인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일해 왔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12년 안디옥국제신학교(AMI, Antioch Missions International College and Seminary)에서 신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당사국의 추가 서면

9.1 2014. 2. 13. 당사국은 진정인의 최근 상황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정부가 2009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보류하고 국내 체류를 허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2009. 11. 20. 보호해제된 이후 진정인은 정기적으로 일시해제 연장신청을 해왔다.

9.2 당사국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2009년 진정인의 난민신청을 기각하였을 때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진정인에게 이란 이외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은 제3국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 당사국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

9.3 진정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해왔으며, 2014년 3월 졸업 예정이다. 진정인이 다닌 신학교의 총장은 진정인이 졸업 후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가도록 그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진정인은 공식적으로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제3국으로 떠날 것임을 고지하였다.¹²⁾ 이러한 약속에 따라 출입국사무소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연기하여 진정인이 보호 해제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9.4 당사국은 진정인이 한국에서 마약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 끝에 진정인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거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진정인의 난민신청을 불인정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9.5 당사국은 진정인의 4년 전 난민신청이 불허되었고, 2009년 이후 진정인의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임시조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하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진정인의 상황이 당사국의 정당한 출입국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당사국 정부는 위원회가 과거 제출한 답변서와 진정인의 현 상황에 근거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11) 정확한 일시는 알려지지 않았다.

12) 당사국은 진정인의 보호해제연장청구에 관한 2012. 5. 11.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쟁점 및 위원회의 심리 절차

심리적격 심사

10.1 동 진정에 포함된 청구를 심리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 절차규정 제93조에 따라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2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a)호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사안을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심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0.3 위원회는 진정인이 2005. 12. 12. 이후로 구금되어 있었고, 그러한 구금에 대해 거의 4년간이나 정기적 사법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구금이 규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출입국 관리절차에 있어서 구금이 그 자체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나, 구금의 정당성, 필요성, 그 상황에 견주어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¹³⁾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송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이 구금되었다는 데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진정인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8.이 될 때까지 그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변호인이 진정인을 대리하였고, 구금에 대해 그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2009. 11. 3. 그의 보호조치에 대한 행정적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인이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동 진정의 관련 부분은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심리부적격임을 결론내렸다.

10.4 진정인이 이란으로 송환될 가능성에 대해, 위원회는 진정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국이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절차는 2006년 3월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진정인은 2006. 7. 10.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결과에 따른 위험이라는 진정의 핵심사안은 행정소송의 법적 청구기간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 관할 상 유효하지 않은 절차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개종 이후인 2007. 2. 20.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점도 역시 인지하였다. 진정인의 난민신청은 신뢰성 부족 및 이란 귀국 시 박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인정되었다. 진정인은 2009. 2. 26.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할 때까지 수차례 연이어 이의제기를 하였다. 진정인은 본인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더 이상의 구제절차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사국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10.5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3국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가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재정착 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진정인에게 재정착 국가가 제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당사국이 협의에 대한 결론이 있을 때까지 이란으로의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지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러한 논의가 무기한이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가 재량적인 것이며, 시한이 없고, 퇴거를 공식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선택의정서의 제5조 제2항 (b)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법적 구제책이 당해 사건에 있어 유효하며, 사실상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인 한 진정인들은 그러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법리를 확인한다.¹⁴⁾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위원회는 진정인의 제3국 재정착 협의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른 완료해야 하는 구제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13) 진정 번호 560/1993, A. v. Australia, 1997. 4. 3. 채택된 견해, 9.3-9.4항.

14) 진정번호 1003/2001, P. L. v. Germany, 2003. 10. 22. 채택된 심리부적격 결정, 6.5항; 진정번호 433/1990, A.P.A. v. Spain, 1994. 3. 25. 채택된 심리부적격 결정, 6.2항.

10.6 동 위원회는 동 규약 제6조 및 7조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서는 이 진정이 심리적격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진행한다.

본안에 대한 심사

11.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동 진정을 심사하였다.

11.2 위원회는 진정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란 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이 강제로 이란으로 송환될 경우, 규약의 제7조에 반하는 처우를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또한 진정인은 이란의 형법이 이슬람 신앙을 저버린 남성에게 사형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위 3.1 참조), 자신이 이란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특히 진정인이 최초의 난민신청이 불인정된 후에야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점 등에 따라 진정인이 국내 당국에 신청한 사안들이 결정된 것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11.3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끼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 및 증거를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체약국의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출입국 당국이 제출된 증거를 평가한다는 것을 존중하지만, 진정인을 이란으로 송환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실질적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정에서, 위원회는 규약의 제6조 및 제7조에서 예견한 바와 같이, 개인이 결과적으로 이동될 어떤 국가 내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제적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 추방, 축출 또는 그 밖에 개인을 자국 영토로부터 퇴거시키지 않을 당사국의 의무를 언급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2004년)을 상기하고자 한다.¹⁵⁾

11.4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인을 이란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규약 제6조 제1항 및 제7조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보호되어 있는 동안 이란 당국자가 그를 방문하였고 개종사실을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이란법에서 배교행위가 범죄행위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검사나 판사가 범죄로 간주하여 종교적 개종을 배교로 기소하며, 이는 자의적 구금,¹⁶⁾ 독방 구금, 고문, 유죄판결과 심지어 사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11.5 나아가 위원회는 진정인이 안디옥선교단이 북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의 “복음이 닿지 않은 곳의 민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안디옥국제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점을 주목한다.¹⁷⁾ 위원회는 당사국도 이견없이 동의하다시피(위 6.2 참조), 이란에서 전도행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는 의견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이 강제퇴거 절차에서 검토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국은 기독교 개종자로서 뿐만 아니라, 뚜렷한 복음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정인이 이란에서 직면할 개인적 위험에 대해 적정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인이 이란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규약 제6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2. 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한 바, 진정인을 이란으로 송환하는 것은 규약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상의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13. 규약 제2조 제3항 (a)호에 따라서,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란으로 송환된다면 규약 제6조 제1항 및 제7조에 반하는 처우의 위험에 관한 진정인의 주장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진정인에게 효과적인 구제

15) 유엔총회 공식기록, 49차 회기, 부록 40번, 제1권(A/59/40(Vol.I)). 첨부3, 제12항.

16)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CCPR/C/IRN/CO/3), 23항.

17) <http://amicenter.net/en/acs/>.

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당사국은 진정인을 이관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는 제3국으로 송환해 서도 안된다. 당사국은 또한 향후에 유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4.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위원 회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과 자유권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의 대 상이 되는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권규약 상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자유권규약 위반이 이루어 진 경우에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받기를 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이번 견해를 공표하고, 이를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널리 알릴 것을 요 청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되었고, 영문본이 원본임. 추후 유엔총회에 제출될 위원회의 연례보고서 에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게재할 것임]

○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4년 6월 26일

해군참모 총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3형 제36호	2013년 압제2호	하사 장기정	가.절도 나.주거침입	성명불상 (피해자)	2013년 압제6호	손목시계 (G-SHOCK/1659)	1
					2013년 압제17호	손목시계 (G-SHOCK/G-9000, 검정색)	1
					2013년 압제22호	손목시계 (ARMANI/AR-0527)	1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4년 6월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비고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4 형제 33436	2014년압제1 108호	이정철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삼성NX카메라	1 대	
2014 형제 33436	2014년압제1 108호	이정철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2	아이패드	1 대	
2014 형제 30975	2014년압제1 015호	성명불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성명불상	2	자동차열쇠	1 개	
2014 형제 30975	2014년압제1 015호	성명불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성명불상	1	오토바이(SH100B, 100cc)	1 개	환가 340,000원
2014 형제 28591	2014년압제9 51호	이한구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률위반(향정)	성명불상	6	FUJIFILM 디지털 카메라	1 개	